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외교관, 공무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

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(이하 "체약당사자"라 한다)는,

그들 국가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그들 국민의 방문교류를 촉진함을 목표로,

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외교관, 공무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우호적인 협의를 하였으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조

1.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유효한 대한민국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, 출국,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 된다.

2. 이 협정에서 언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무 여권은 공무보통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 2 조

이 협정의 제 1 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국제 여행객에게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, 출국, 또는 경유하며,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형식을 준수한다.

제 3 조

1. 이 협정 제 1 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관련 국제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그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.

2. 이 협정 제 1 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3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,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친다.

제 4 조

유효한 외교관, 공무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및 군 장성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무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여행하기 전에 공식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다.

제 5 조

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, 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, 기피인물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그 영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영역 내 체류를 종료시키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

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,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근거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. 그러한 정지, 또는 이의 해제는 사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된다.

제 7 조

1.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 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제 1 조에서 언급된 그들의 외교관, 공무 및 관용 여권의 견본 교환을 완료한다.

2.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, 각 체약당사자는 새로운 모든 여권이나 기존 외교관, 공무 및 관용 여권 형식의 모든 변경을 도입하기 30 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,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제공한다.

제 8 조

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.

제 9 조

1.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마지막 서면 통보일 후 30 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.

2.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.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희망할 경우,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며, 이 협정은 통보일 후 90 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.

3. 이 협정이 발효되면 2013 년 6 월 27 일에 서명된 「중화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」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.

4.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4 년 11 월 10 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,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.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